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51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 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안 제177조제2항제2호, 제241조제3항 단서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1)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

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약류 등의 감시·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

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세액”을 “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제6항, 제15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채납자”라 한다)의 채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채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채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確認員)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집중관리 품목”이라 한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운영인”을 “화주 또는 운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2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제1항제4호의2 중 “제223조의2를”을 “제223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23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⑧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 보류 또는 유치 사실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 이후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그 관리 시작일부터 20일째 되는 날과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의10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법·불량·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다)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 정보를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4조의11제1항제1호 중 “마약류등”을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합정보”를 “통합정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의 제조업·판매업·임대업·수출입·소지 등의 허가·신고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포류등

제267조제2항 중 “제10조의4까지”를 “제10조의7까지”로 한다.

제27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제177조제2항”을 “제177조제2항제1호”로 한다.

1.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7조제2항제2호(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제116조제1항·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본문”을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2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327조의2제1항 중 “관세정보시스템을”을 “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2. 제9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반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u>세액</u>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 --- <u>세액(「지방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5항·제6항, 제15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u>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3. <u>제37조제1항제3호</u> 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37조제1항</u> ----- ----- ----- ----- -----

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 9. (생략)

② (생략)

<신설>

--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채납자”라 한다)의 채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채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채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생략)

<신 설>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確認員)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④ (생 략)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
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물품

② (생 략)

<신 설>

한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
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
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
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 ----- ----- ----- ----- ----- -----
---	---

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생략)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

② ~ ⑤ (생략)

제177조(장치기간)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석궁(이하 “총포류 등”이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7조(장치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
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
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
의대여 등의 금지) (생 략)

<신 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
제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
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
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화주 또는 운영인--
-----.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
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
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
의대여 등의 금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
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
제재) ① -----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4의2. <u>제223조의2</u>를 위반한 경 우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 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 7. (생 략) <u><신 설></u> ② 관세청장은 <u>제1항 각 호에</u>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 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 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 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u>제1항 각 호에</u> 따른 지식재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223조의2제1항을</u> ----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산 업기술 ② ----- <u>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u>-----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u>-
--	--

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
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
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
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
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
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
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
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제1항제1호부터 제7
호까지-----

-----.

-----.

⑧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
른 물품이 제1항제8호에 해당하
는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
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
정보원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 이후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그 관리 시작일부터 20일째 되는 날과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과 협조)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
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
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
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과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
공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
인된 불법·불량·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
다)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
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관련 정보를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
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
의 제출 요구 등) ① -----

--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2. -----

----- 통합정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의 제조업·판매업·임대업·수출입·소지 등의 허가·신고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u><신 설></u>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② (생략)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u>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u>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
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
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생 략)

④ (생 략)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생 략)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총포류등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0조의7까지-----
-----.

제27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u><신 설></u> 1. (생 략) 2. ~ 4. (생 략)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u>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7. (생 략) ⑧ (생 략)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u>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u>을 위반하여 과세	<u>아니한 자</u> <u>1의2. 제177조제2항제2호(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77조제2항제1호</u>----- ----- ----- ----- ----- ----- --- 7.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 <u>제116조제1항·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u>
--	---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

4항-----

-----.

-----.

② 세관장은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 본문 및 제2항-----

-----.

제324조(포상) ① -----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의3에 해당되는 관세법을 세
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
로가 있는 사람

2. ~ 4. (생략)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
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
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④ (생략)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
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
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
(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
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포상금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
립) ① ---- 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국세 수입 +45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수입	○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42의2)		추	정	곤	란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폐지(\$90)	90	90	90	90	90	450	90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115의2)		추	정	곤	란		
	소 계(B)	90	90	90	90	90	450	90
총 비용(A-B)		△90	△90	△90	△90	△90	△450	△9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2조의2제1항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추가(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
2	제90조제1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함
3	제115조의2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 정정시 세액 증가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 존재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 감면 규모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2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
3	제115조의2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액 정정 규모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42의2)
 -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산세 감면 규모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폐지(§90)
 - 세수증 : 450억원(연평균 90억원)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련 관세 감면액을 감안하여 세수효과 규모 추정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115의2)
 - 세수증 : 추정곤란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액 정정 규모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강원식	서은혜	최지훈	최재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원식	044-215-4416	onechic7@korea.kr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강원식	서은혜	최지훈	최재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원식	044-215-4416	onechic7@korea.kr